Deloitte.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since 1845

Korea | Tax | 3 January 2025

Korean Tax Newsletter

2024 년 12 월

CONTENTS

세법개정

- 2024 년 세법개정안(국세 및 지방세) 국회 본회의 통과

세무동향

- 여행사 등 13 개 업종, '25 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예규판례

○ 법원

-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위법사유로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통지 등 절차 미준수)을 주장한 사건
-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조세심판원

-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19 년 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한도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기획재정부

-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된 경우, 기업소득 가산 여부

○ 행정안전부

-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를 기술로 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이 해당 사업을 기존 운영하던 세탁업과 접목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대도시 안의 중과세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청

- 아랍에미리트(UAE)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33②1)에 따른 "동일하게 면세하는"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분할신설법인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계산 시, 직전 3 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분할 전 분할법인이 분할사업 부문에 투자한 금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

세법개정

2024 년 세법개정안(국세 및 지방세)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4.12.10.(화) 법인세법 등 총 13 개 세법개정안(국세)을, '24.12.26.(목) 지방세법 등 총 5 개 세법개정안(지방세)을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이 중 기획재정부가 '24.9.2.(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국세) 대비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12.1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수정내용 ☞ 보도자료(Link)

■ **조세특례제한법**

○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 삭제
- (*)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분리과세

○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선 ⇒ 현행 유지
- [현행] 상시근로자수 증가 시 중소·중견 3 년, 대기업 2 년간 공제하되, 세액공제 후 2 년 내 상시근로자수 감소하는 경우 감소인원 만큼 추징

○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 현행 유지
- [현행] (세액공제액)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건당 2 만원 / 부가가치세 건당 1 만원, (공제 한도) 세무대리인 300 만원, 세무법인 750 만원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현행 유지
- [현행] 외국자회사를 통한 광업권 등 해외자원개발 투자 시 100% 출자한 자회사만 허용

■ **부가가치세법**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1.3%, '27 년 이후 1%) 축소 ⇒ 현행 유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정부안이 부결됨에 따라 개정사항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저 과표구간 확대 ⇒ 현행 유지
- [현행] (최고세율) 과세표준 30 억원 초과 50%, (최저 과표구간) 1 억원

○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 현행 유지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현행 유지

세무동향

여행사 등 13 개 업종, '25 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국세청은 여행사 등 13 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5 년부터 해당 업종은 10 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4.12.1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보도자료(Link)

○ 새롭게 추가되는 13 개 업종

- ①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② 여행사업, ③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④ 앰뷸런스 서비스업, ⑤ 실내 경기장 운영업, ⑥ 실외 경기장 운영업, ⑦ 스키장 운영업, ⑧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⑨ 수영장 운영업, ⑩ 볼링장 운영업, ⑪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⑫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⑬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발급의무

- '25.1.1. 부터 거래 건당 10 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함

예규판례

[법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위법사유로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통지 등 절차 미준수)을 주장한 사건

(대법원 2024.12.12. 선고 2021 두 34688 판결, 파기환송)

■ 쟁점

과세관청이 결손금 감액경정을 하면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납세의무자에게 방어권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선행하는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안

원고는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2012 사업연도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음.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5.7.7.부터 2015.8.2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2010 사업연도 결손금과 2012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각각 감액경정하고(그 결과 2012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경정함) 이를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 2015.10.15.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고지하였다가, 2016.7.15. 그 일부를 감액경정·고지하였음(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 70 조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 66 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 3144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 조 제 1 항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 사무처리규정」(2016. 12. 27. 국세청훈령 제 217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7 조는 세무서장은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경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등 결정(경정)통지서(별지 제 9 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된 2010. 1. 1. 이후 최초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해당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않는 이상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한 결손금 외에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음(대법원 2017 두 63788 판결 참조). 그러나 과세관청이 결손금 감액경정을 하면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납세의무자에게 방어권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결손금 감액경정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선행하는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함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2010 사업연도 결손금 감액경정을 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른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2010 사업연도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법원]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 두 34122 판결, 파기환송)

■ 쟁점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 20 조 제 1 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사안

원고는 화학제품, 의약품 및 기타 제품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소속 임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해 왔음. 2021.3.11.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 상당액을 2015 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근로소득세액과의 차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를 상대로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1.10.18.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함

판결요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 20 조 제 1 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함

2)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음

3)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 3 조 제 1 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님. 근로복지기본법 제 3 조 제 1 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음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조세심판원]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 서 2408, 2024.10.28., 취소)

■ 쟁점

쟁점법인의 제 3 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 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자회사 발행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보다 큰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사안

청구인들은 D 주식회사(이하 "D")의 주요주주들이고, 2022.4.1. D 는 103,000 주의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기존주주인 청구인들이 아닌 제 3 자인 E 와 F(이하 "쟁점주주들")에게 각 80,000 주와 23,000 주를 배정하였고, D 의 유상증자가액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 63 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으며, D 가 지분 100%를 보유한 주식회사 G(이하 "G")의 주식가치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등 D 의 1 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 이를 참고로 쟁점유상증자 시 발행가액을 쟁점주주들로부터 납입받았음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7.3.부터 2023.9.24.까지 D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D 의 1 주당 순자산가치 평가 시 D 가 지분 100%를 보유한 G 의 주식가치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G 는 2022.4.5.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2022.4.6. 유상증자가액 미만에 타인에게 매각되는 등, 이는 보충적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G 의 주식가치가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되는 등 D 의 증자 후 1 주당 순자산가치는 OOO 원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은 제 3 자 직접배정방식인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주주들로부터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2022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22.4.1. 증여분 증여세를 각 경정·고지하였음.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8. 심판청구를 제기함

결정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 55 조 제 1 항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 60 조 내지 제 6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순자산가액이 0 원 이하인 경우에는 0 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 60 조 제 3 항 및 법 제 6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순자산가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더라도 최소한 취득원가로 평가되도록 하는 것이고, 취득가액 대비 보충적 평가액이 급격히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바, 청구법인은 G 주식의 가치를 장부가액보다 적은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따라 평가한 것이 아니라, 법규정에 따른 원칙적인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점,

장부가액보다 적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산의 취득가액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의 차이의 정도, 취득 시점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기준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기업이 향후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할지 아니면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매각 이후의 해당 비상장회사의 순자산가액 및 당기순이익의 회복·개선정도 등을 고려할 때, 취득 이후 평가기준일 까지의 기간 동안 가치가 급격히 감소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인바,

처분청은 G는 만성적자로서 장기간 자본잠식 상태로 실질가치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G 의 누적된 손실은 매년 상각이 실시되는 영업권과 감가상각비로부터 주로 비롯된 것으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평가할 경우 손익분기점 수준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영업권 상각은 2021 사업연도에 종료되어 매각 이후인 2023 사업연도의 경우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며, G 의 사업 또한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장부가액보다 적은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휴업·폐업 등에 준하는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2022.4.5. G의 유상증자 시 OOO원의 현금이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3 자에게 OOO 원에 매각된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G는 사업구조 개편 및 코로나 19 라는 상황하에 조속히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고,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장부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G 의 유상증자(2022.4.5.)와 매각(2022.4.6.)은 평가기준일(2022.4.1.)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 사유를 D 의 G 주식의 취득 시점과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평가 시점(2022.4.1.) 사이에 G 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그 외 다른 특별한 사유를 처분청이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G의 주식가치를 장부가액보다 적은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주들로부터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19년 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한도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 중 4737, 2024.11.21., 경정)

■ 쟁점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 29 조의 7 제 1 항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한도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사안

청구법인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 1600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개정전법률") 제 29 조의 7 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쟁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하였다가, 2023.5.11.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 0.33 명(=청년 증가 수 △5.09 명+청년외 증가 수 5.42 명)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2018·2019·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청구(이하 "제 1 차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전액 환급하였음

이후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 29 조의 7(2019.12.31. 법률 제 16835 호로 개정된 것으로, 이하 "개정된법률") 제 1 항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 사업연도인 2018 사업연도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인원인 5.42 명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한다며 2024.3.22. 경정청구(이하 "제 2 차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개정된법률이 적용되는 시기(2020 년 이후) 전의 사업연도 또한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산정되어야 한다며 2024.5.3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처분청은 개정된법률이 2020.1.1. 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도 적용되므로 2018·2019 사업연도 쟁점세액공제액 계산 시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감 인원 수와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감 인원 수를 통산하여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2018·2019 사업연도 당시「조세특례제한법」제 29 조의 7 제 1 항은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개정된법률 부칙 제 1 조(시행일)는 "이 법은 202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 2 조(일반적 적용례) 제 1 항은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법률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2018·2019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의 증감 인원 수를 산정하여 청구법인의 2018·2019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3 부 443, 2023.5.17. 같은 뜻임)

다만, 개정된법률 부칙 제 1 조 및 제 2 조에 따라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하여는 개정된법률이 적용되는 것이고, 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 776 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 10 호의 8 서식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의 작성방법에서도 2 차년도 및 3 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시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 중 처분청이 개정된법률에 따라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쟁점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202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획재정부]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된 경우, 기업소득 가산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57, 2024.11.28.)

■ 질의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 (1 안) 기업소득에 가산함
- (2 안) 기업소득에 가산하지 않음

■ 사실관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 시 과세대상 소득인 "기업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등의 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함
- 한편,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인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다시 환입(*)되는 경우 미환류소득 계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보험회사의 보증준비금: 기적립 보증준비금 > 결산일 현재 보증준비금 ⇒ 초과금액은 환입 가능

회신

(2 안)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하지 않음

[행정안전부]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를 기술로 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이 해당 사업을 기존 운영하던 세탁업과 접목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대도시 안의 중과세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3732, 2024.10.30.)

■ 질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바, 쟁점 법인이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기존 운영하던 세탁업과 해당 사업을 접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대도시 안의 중과세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 13 조 제 2 항 제 1 호 등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 되지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 26 조 제 1 항 제 34 호에서는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하나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 15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쟁점 법인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선정 과정에서 제출된 기술사업계획서 내용을 살펴보면, 기술명은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 최종 제품은 “런드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술의 내용은 “① 모바일로 세탁 서비스 주문을 하고 의류를 전용 수거함에 담아 집 문앞에 내어 놓으면 스마트팩토리로 가져와 세탁을 하여 24 시간 내에 집 문앞에 가져다 놓는 서비스 기술과 ② 비대면으로 세탁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대량의 세탁물을 세탁이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팩토리를 개발”한 것으로 각각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볼 때, 쟁점 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에 선정된 기술인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에는 세탁업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세법」 제 13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 26 조 제 1 항 제 34 호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중과세에서 제외되는바, 쟁점 법인은 ①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를 기술로 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에 선정되어 있는 점,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과정에서 제출된 기술사업계획서에서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에는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세탁업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해당 사업을 기존 세탁업과 접목하여 운영한다는 점, ④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존 운영하던 세탁업에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를 접목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기존 업종에 기술혁신을 더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제외 업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과세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설비의 현황, 매출액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해야 할 사안임

[국세청] 아랍에미리트(UAE)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33②1)에 따른 "동일하게 면세하는"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부가-3304, 2024.5.13.)

■ 질의

아랍에미리트(UAE)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3 조 제 2 항 제 1 호에서 말하는 "동일하게 면세하는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신청인은 비알콜음료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 한편 ○○○ Asia 는 아랍 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 두바이에 위치한 회사로서, 모회사인 ○○○ GmbH 가 생산하는 에너지음료인 ○○○(이하 "제품")의 아시아 지역 판매를 총괄하고 있음
- 신청인은 ○○○ Asia 와 Distribution Agreement(이하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제품을 수입하고 이를 그룹 내 관계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에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음
- 신청인은 제품의 국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신청인 소속의 전담 마케팅 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기 유통계약에 따라 ○○○ Asia 에 국내 제품 광고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신청인이 ○○○ Asia 에 제공하는 광고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71.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 제 25 조 및 시행령 제 33 조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한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상호면세국의 범위)는 상호면세국의 범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UAE 는 상호면세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 25 조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는 동일하게 면세하는 국가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광고용역이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국가가 상호면세국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한다는 입증서류 등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청] 분할신설법인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계산 시, 직전 3 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분할 전 분할법인이 분할사업 부문에 투자한 금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4-법인-2719, 2024.9.25.)

■ 질의

'22 과세연도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금액 계산 시 분할 전 분할법인이 투자한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22 년에 AAA(주)로부터 BB 생산 및 CC 사업 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 신설된 법인임
- '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고하였으며, '23 사업연도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산한 금액으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23.2 월 세법개정으로 추가공제 적용 시 분할 전 분할법인이 투자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봄)

사업연도	'19 년	'20 년	'21 년	'22 년(분할)	'23 년
분할법인	OO 조원	OO 조원	OO 조원	OO 조원	-
분할신설법인	-	-	-	OO 조원	OO 조원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 24 조 제 1 항 제 2 호 나목의 추가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 21 조 제 8 항(2023.2.28. 대통령령 제 33264 호로 개정된 것) 개정 이전에 분할법인이 투자한 금액도 분할신설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3 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국세청]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838, 2024.11.21.)

■ 질의

2016 사업연도에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손금불산입한 국외특수관계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2024 사업연도에 채무법인의 청산으로 인하여 분배받을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무조정으로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설립 이후 혈당측정기 및 코로나 등 다양한 분자진단 키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2007 년 미국 현지시장 개척을 위하여 미국법인과 합작하여 해외현지법인을 공동 설립함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경영을 미국법인 측에서 전담하는 과정에서 부진한 매출실적과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인하여 막대한 결손금이 누적되는 등 현지법인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질의법인이 회수하여야 할 외상매출금 또한 2010 년 ~ 2015 년 사이 약 ***억원에 이르게 됨
- 추심 가능한 금원을 일부 변제 받은 후, 잔여 채권 회수를 위하여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처 및 법인 경영자를 상대로 물품대금회수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외부회계 감사 시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법인 장부상 외상매출금 잔액을 대손계상하고, 동 금액은 「법인세법」상 대손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함
- 물품대금회수소송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다가 피고의 무재산 등의 사유로 종결되었고, 해외현지법인은 환가가능한 재산이 전무하여 청산(해산)을 신청하였으며, 2024 년 청산 완료되었음

회신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이하 “채무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2016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 사업연도에 채무법인의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해당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2024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

(사전-2024-법규법인-0638, 2024.11.28.)

■ 질의

유지보수용역에 필요한 초기예비품과 관련하여 국내고객과 예비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예비품을 공급하는 거래에 대해 국내지점이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 영업소(이하 '국내지점')는 ** (이하 '외국본점')의 국내지점임
- 외국본점은 국내고객이 운영하는 천연가스 발전소에 대하여 가스터빈 설비 및 부품의 점검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이하 '유지보수용역)을 체결한 후 국내지점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지보수용역에 필요한 초기예비품과 관련하여 국내고객과 예비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예비품을 공급('쟁점거래')하고 있음(국내지점은 유지보수용역에 관해 국내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국내고객은 수입자로서 예비품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세관장은 해당 국내고객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국내고객은 수입한 예비품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동 수입 세금계산서에 근거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음
- 국내지점은 유지보수용역대가 및 예비품공급대가를 국내지점의 익금에 산입하였고, 예비품공급에 관해 국내고객에게 계산서를 발급함

회신

천연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법인세법」 제 94 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유지보수용역에 필요한 초기예비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초기예비품을 국내사업자에게 공급(이하 '쟁점거래')하는 경우로서, 쟁점거래로 인한 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같은 법 제 121 조에 따라 쟁점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Contacts

상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지원 Tax & Legal Leader	김경조 Partner	정호석 회계사
+82 (2) 6676-2416	+82 (2) 6099-4279	+82 (2) 6099-4734
jekwon@deloitte.com	kyungjokim@deloitte.com	hosjung@deloitte.com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80 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 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